

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
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. 2.

세종특별자치시장

1. 지원규모 : 연간 550억원

(단위 : 억원)

자금구분	자금별 규모(연간)	대출금리 (변동)
합 계	550	
창업	60	4.0%
경쟁력강화	150	4.0%
혁신형	130	3.5%
기업회생	10	3.0%
경영안정	200	2~3% 보전

2. 지원대상

-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「별표1」의 '업종별 세부지원대상'과 「별표2」의 '자금별 지원조건'에 해당하는 기업

3.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

-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, 휴·폐업중인 기업
-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,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주식지분의 30%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)
-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, R&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(누적)을 초과하는 기업(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(<http://sims.go.kr>) 을 통해 확인)

4. 지원조건 (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별표2 참조)

① 창업자금 : 60억원 규모

- 시설자금 : 20억원, 연리 4.0%,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
- 운전자금 : 4억원, 연리 4.0%,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

② 경쟁력강화자금 : 150억원 규모

- 시설자금 : 20억원, 연리 4.0%,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
- 운전자금 : 4억원, 연리 4.0%,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

③ 혁신형 자금 : 130억원 규모

- 5억원, 연리 3.5%,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
④ 기업회생자금 : 10억원 규모

- 5억원, 연리 3.0%,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

⑤ 경영안정자금 : 200억원 규모

- 3억원 /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5억원 (연간 매출액 범위 내)
-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.0%p 이자보전, 2년 거치 일시상환
- ※ 여성·장애인 기업은 1.0%p 추가보전
- ※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, 글로벌강소기업,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,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, 스마트공장 도입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.0%p 추가 보전(1회한정)

◆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**중도상환 수수료 면제**

《주의사항》

-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**휴업·폐업** 또는 세종지역 이외로 **이전** 및 소재할 경우 **자금지원이 중단**됩니다.
-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(약정)에 의합니다.
- 상기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**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** 시에는 별도 공고에 의해 **분기별 대출 금리를 조정** 할 수 있습니다.
- 경영안정자금 실행 후 **타은행으로 변경(대환) 불가**합니다.

5. 신청 및 접수

접수기관 및 문의처	접수기간
<p>(재)세종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문의처) ☎ 044-850-2147, 044-850-2142 ◦ (주 소) (30033)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, 세종SB플라자(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) 5층 510호 <p>※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 「사업공고」 참조</p>	<p>2023. 1. 20.~ 2023. 12. 10. (자금 소진시까지)</p>

○ 신청 시 구비서류

- ① 자금용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- 창업자금, 경쟁력강화자금, 혁신형자금 → (별지 제1호) 서식
 - 경영안정자금, 기업회생자금 → (별지 제2호) 서식
- ② 공장등록증(공장면적 500㎡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
- ③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(1년이상 사업체,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)
-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(전년도)
- ⑤ 시설계약서,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(별표3 참조)
- ⑥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3호)

6. 용자대상자 선정

- 방 법 : 시 조례의 용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
- 통 보 : 15일 이내(신청서 접수일로부터)
- 자금별 용자 취급 은행

《 ①~④ 창업 외 4개 자금 협약은행(7개) 》

- | | | |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▶ 하나은행 | ▶ 신한은행 | ▶ 기업은행 | ▶ 국민은행 |
| ▶ 농협은행 | ▶ 우리은행 | ▶ 산업은행 | |

《 ⑤~⑥ 경영안정자금 협약은행(11개) 》

- | | | |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▶ 하나은행 | ▶ 신한은행 | ▶ SC제일은행 | ▶ 신협은행 |
| ▶ 농협은행 | ▶ 우리은행 | ▶ 전북은행 | ▶ 수협은행 |
| ▶ 기업은행 | ▶ 국민은행 | ▶ 새마을금고 | |

※ 단, "지역농업협동조합", "신용협동조합", "새마을금고" 는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

【별표 1】

업종별 세부지원대상

※ 공통적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

지원업종	세 부 지 원 대 상 업 종
제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조업 전업률이 30%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※ 제조시설면적 500㎡미만 소기업은 건축법에 따른 제2종근린 생활시설 및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※ 품목코드 33402, 33409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은 제외 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○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
건설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식 산업센터 건설사업자
지식 서비스 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산업발전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,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4 참고

※ 상기 업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

※ 상기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 제외대상(단,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)

【별표 2】

자금별 지원조건

1. 창업자금 · 경쟁력강화자금

종 류	시 설 투 자 자 금	운 전 자 금
용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장 및 건축 소요자금 ◦ 공장의 신설, 증·개축 소요자금 및 부지매입 비용 ※ 부지매입비는 공장 건축허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◦ 기계설비 등 생산(서비스) 시설의 신규 구매·개체 소요자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설투자 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의 운전자금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
용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억원 이하 (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4억원 이하 (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)
용자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8년 이내(3년 거치, 5년 균분상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년 이내(1년 거치, 4년 균분상환)
용자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리 4.0% 	
대출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	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인 기업만 해당 	

2. 혁신형 중소기업자금

종 류	시 설 및 운전자금
용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벤처·이노비즈(Inno-Biz)·메인비즈(Main-Biz)·우수신제품(NEP) 및 신기술(NET) 인증 기업 ◦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◦ 최근 3년 이내 대학·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◦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판정을 받고 사업화하려는 기업
용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억원 이하 ※ 건당 1회
용자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년 이내(2년 거치, 3년 균분상환)
용자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리 3.5%
대출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용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

3. 기업회생자금

종 류	운 전 자 금
용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의 3%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 (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(읍면동장)으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) ◦ 기업구조조정,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
용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억원 이하 - 생산에 필요한 원·부자재 구입비, 기타 기업경영 소요 경비 - 근로자 임금지급에 소요되는 자금 등
용자기간	◦ 3년 이내(1년 거치, 2년 균분상환)
용자금리	◦ 연리 3.0%
대출기한	◦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

4. 경영안정자금

종 류	운 전 자 금
용자대상	◦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, 해당 업종 전업률 30% 이상,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
용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3~5억원 이하(연간 매출액 범위 내) - 일반기업 3억원,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이상 기업 5억원
용자기간	◦ 2년 거치 일시상환
용자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(변동금리)중 2.0%p 이차보전 -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, 글로벌강소기업,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,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우수기업, 스마트공장 도입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.0%p 추가보전(1회에 한함) - 여성·장애인 기업은 1.0%p 추가보전
대출기한	◦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
비고	◦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은 추천 제외

【별표 3】

가점 및 감점부여 대상 기업

가. 가점대상

- ① 「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(5점)
 - ②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(여성기업 확인서 첨부)(5점)
 - ③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(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)(5점)
 - ④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(5점)
 - 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(3점)
 - ⑥ 법인의 경우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(생산 공장) 모두를 두는 기업(5점)
 - ⑦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소기업(2점)
 - ⑧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(3점)
 -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(5점)
 - ⑩ 중소기업육성 유공관련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표창 수상 기업(5점)
 - ⑪ 세계 일류화사업 및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(3점)
 - ⑫ 중소기업수출지원 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(3점)
 - ⑬ 중소기업육성시책(해외시장개척, 기업인아카데미, 수출기업인협의회 등) 참여기업(5점)
 - ⑭ 조직화·협업화·공동화 및 정보화 추진기업(2점)
 - ⑮ PL보험 가입기업(2점)
 - ⑯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(5점)
 - ⑰  KT, KC, GM, GQ, AS, GR, ISO9000 : 4000, TS16949 인증기업(3점)
 - ⑱ ANSI, BSI, CE, CSA, e-마크, ECO, GOST, FCC, FDA, GS, IECCE, JIS, PSE, SASO, S-마크, UL, VDE 등 외국규격 인증기업(3점)
 - ⑲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인증을 받은 기업(5점)
 - ⑳ 세종특별자치시 품질경영교육을 받은 기업(교육필증 첨부)(5점)(1회에 한함)
 - ㉑ 지역인재 채용기업
 -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(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) 3명 미만(3점)
 -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(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) 3명 이상(5점)
 - ㉒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한 방침(공고)에 따른 기업
- ※ 최대 가점 10점 범위에서 각 항목별 중복 가점부여는 가능하나, 같은 항목 내에서 중복으로 가점부여는 불가

나. 감점대상

- ①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%이상 95%이하(-5점)
- ②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%미만(-10점)
- ③ 기타 시장이 정한 방침(공고)에 따른 기업

【별표 4】

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대상 세부 업종

해당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○ 환경 정화 및 복원업	E39
○ 도매 및 상품중개업	G46
○ 전자상거래업	G47911
○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	J581
○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J582
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	J5911
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J5912
○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	J59201
○ 전기통신업	J612
○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J62
○ 정보서비스업	J63
○ 연구개발업	M70
○ 법무관련 서비스업	M711
○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	M712
○ 광고업	M713
○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	M714
○ 경영컨설팅업	M71531
○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M72
○ 전문디자인업	M732
○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	M73902
○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	M73903
○ 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	M73904
○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73909
○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	N74100
○ 보안시스템 서비스업	N75320
○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	N75991
○ 전시 및 행사 대행업	N75992
○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(신용정보를 수집·제공하는 사업만 해당)	N75993
○ 포장 및 충전업	N75994
○ 온라인 교육 학원(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)	P85504
○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	P8565
○ 병원	Q861
○ 의원	Q862
○ 기타 보건업(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)	Q869

* 색칠된 업종이 지원대상 세부업종(출처 : 한국표준산업 분류표(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2))